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성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021

발의연월일: 2020. 12. 29.

발 의 자:이성만・맹성규・박 정

송갑석・송옥주・이규민

이학영 · 허종식 · 홍영표

홍정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석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과 그에 따른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관련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지원취소·환수 등 불이익 처분의 내용 및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여 관련 제도운영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함(안 제24조의2).

또한, 1986년 1월 8일 이후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이 1,00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어 행정제재 수단으로서 실효성이 미미하여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·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3,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, 시·도지사에 대한 권한 위임 외에 공단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(안 제21조 및 제41조).

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4항 중 "1천만원"을 "3천만원"으로 한다.

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4조의2(석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 등)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석탄산업의 합리화와 연탄 소비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석탄 및 연탄 판매가격의 최고액을 정할 수 있다.
 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석탄 및 연탄 판매가격의 최고액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
 -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석탄 및 연탄 판매가격의 최고액을 정하는 경우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석탄광업자 및 연탄을 제조하는 석탄가공업자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그가 받은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.
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
 - 2. 지원금을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
 - 3.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최고액을 위반하여 석탄 및 연탄을 판

매한 경우

- 4. 그 밖에 석탄산업의 합리화, 수급안정 및 유통질서를 해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- ⑤ 제4항에 따라 지원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-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지원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
- ⑦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·방법·절차, 제4항에 따른 지원의 취소 및 환수의 방법·절차, 제5항에 따른 지원대상 제외의 기준 및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41조의 제목 "(권한의 위임)"을 "(권한의 위임 및 위탁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"위임"을 "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제1항제6호 중 "제8호"를 "제9호"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(등록의 취소 등) ① ~ ③	제21조(등록의 취소 등) ① ~ ③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	4
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또는	
제3항에 따라 영업 또는 광업	
의 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로	
서 그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	
를 하면 이용자 등에게 심한	
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	
려가 있을 때에는 그 영업 또	
는 광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	<u>3천만</u>
<u>천만원</u>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·	<u>원</u>
징수할 수 있다.	
⑤・⑥ (생략)	⑤·⑥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24조의2(석탄 및 연탄의 최고
	판매가격 지정 등) ① 산업통
	상자원부장관은 석탄산업의 합
	리화와 연탄 소비자의 생활안
	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석탄 및
	연탄 판매가격의 최고액을 정
	<u>할 수 있다.</u>
	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
	항에 따라 석탄 및 연탄 판매

- <u>가격의 최고액을 정하였을 때</u> 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
-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석탄 및 연탄 판매 가격의 최고액을 정하는 경우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을 위하 여 석탄광업자 및 연탄을 제조 하는 석탄가공업자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 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그가 받 은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 수하여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
- 2. 지원금을 받기 위한 요건을갖추지 못한 경우
- 3.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최

 고액을 위반하여 석탄 및 연

 탄을 판매한 경우
- 4. 그 밖에 석탄산업의 합리화, 수급안정 및 유통질서를 해치 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

제41조(권한의 위임) 이 법에 따 제41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---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 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하는 경우

- ⑤ 제4항에 따라 지원이 취소 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-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 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지원 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
- ⑦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· 방법·절차, 제4항에 따른 지원 의 취소 및 환수의 방법·절차, 제5항에 따른 지원대상 제외의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한다.

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----.